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61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 : 엄태영·김정재·김상훈

조지연 · 서천호 · 최보윤

우재준 • 권성동 • 유상범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시장의 자금경색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급랭 등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부동산 사업장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기관이 부재하여 사업장 정상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비주택 부동산 사업 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에 PF대출 등을 받아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 상으로도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에 조합원의 건설업 운영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조합원 외에 시행사 등에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 나. 공제조합 사업내용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 발주자에게 보증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PF대출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2항제3호 신설).
- 다. 공제조합이 안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발주자를 대상으로 보증 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마련하 도록 함(안 제57조의2제1항).
- 라. 공제조합이 안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발주자를 대상으로 보증 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운영에"를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로 한다.

제5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

제57조의2제1항 중 "제56조제1항제1호"를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6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61조 중 "조합원"을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의한 발주자를 포함한다)"으로, "공사"를 "공사 또는 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안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 |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 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 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 ----- 운영 및 건설산업의 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 건전한 발전에 -----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 립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생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현 행과 같음) 략)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신 설>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증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보증 규정) ① 공제조 제57조의2(보증 규정) ① -----합이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6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조제2항제3호-----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행능력을 실제 조사한 후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재산상태 ---조합원(제56조제2항제3호에 등을 평가하고 해당 <u>공사</u>의 이 <u>의한 발주자를 포함한다)</u>-------- 공사 또는 사업-----